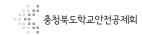


공제급여, 학교폭력 II해 지원, 학교<mark>안</mark>전사고 II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목 차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소개 -----3

- 1. 공제급여의 종류
- 2. 교육활동 시간 및 질병
- 3. 사고 처리 및 청구 절차
- 4. 요양급여(치료비) 지급 범위
- 5. 요양급여 신청 서류
- 6. 지원 대상 학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5

- 1. 학교폭력사고 피해 지원 절차 2. 치료비 등 지급 범위 및 기간
- 3. 학교폭력 치료비 청구 서류
- 4. 교육청 지정 전문심리상담기관
- 5. 지원 대상 학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8

-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대상자 선정 절차
- 2. 치료 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 3. 지원 범위
- 4.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대상자 신청 서류
- 5. 치료비용 청구 서류
- 6. 지원 대상 학교





주요 문의 사항

..10

I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소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생명·신체 피해에 대하여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공제급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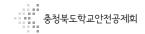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기 준	산 정 방 법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소요 되는 비용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학교안전사고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으로 상시· 공제급여		
유족급여·장의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규정에 따름	
위로금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2. 교육활동 시간 및 질병

시 간	질 병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기숙사 생활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日射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규정 외 시간 및 질병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아님

학교안전사고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 하는 질병 등을 말합니다.

2



3. 사고 처리 및 청구 절차 -



- ·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 · 보호자 및 학교장 보고



- · 치료 후 학교 또는 공제회로 제출
- · 청구시효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학교장은 지체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통지



- · 서류 접수 후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지급
- · 14일 이내 결정, 경우에 따라 자료 보완 요청 및 연장

- 4. 요양급여(치료비) 지급 범위 =

구 분	급여		비급여
지그 데샤 어버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지급
지급 대상 여부	전액	지급	월구 시합

※ 일부지급: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규정된 항목

5. 요양급여 신청 서류 -

구 분	내 용
공제급여청구서(원본)	- (학교 또는 청구인)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해 작성 후 출력 또는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출력 - 청구인 서명[날인], 학교장 직인 날인
학교안전사고발생신고서(원본)	- (학교에서)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사고 등록 후 통보 ▶ 출력하여 결재란 각 서명 또는 날인

구 분	내 용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원본)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원본)	- 카드[매출]전표, 복사본, 세부내역서는 심사 불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또는 사본)	-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 - 치료비용에 비급여 항목이 없는 경우 생략
청구인 통장 표지 (사본)	- 공제급여액 지급 시 계좌 확인을 위함
진단서 (원본)	- 청구액 50만원 초과인 경우 제출 - 발급 수수료 실비 지급 [1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청구액 50만원 초과인 경우 제출 -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 확인을 위함

※ 경우에 따라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제급여 지급 심사 및 결정

-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14일 연장 가능)(학교안전법 제41조)
- 필요한 경우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학교안전법 제42조)

- 6. 지원 대상 학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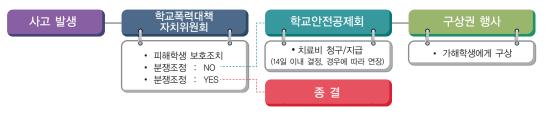
유치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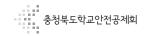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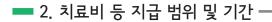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학생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학교폭력사고 피해 지원 절차







구 분	지 급 범 위	기 간	비고
심리상담 및 조언	- 실비 지급	2년	교육청 지정 기관에 한함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급여 : 전액 지급 - 비급여 : 선별 지급		

[※] 치료비 등 청구액이 통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회 심사를 거쳐 지급 제한

■ 3. 학교폭력 치료비 청구 서류 —

구 분	내 용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원본)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후 ① 확인(시스템 등록), ② 출력하여 제출 - 청구인 서명, 공제가입자(학교장) 직인 날인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원본)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학교폭력 사고통지서 작성 후 ① 확인(시스템 등록), ② 출력하여 제출 - 학교 결재 책임자 각 서명(날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 학교폭력사고 통지서 작성 시 스캔 파일(PDF) 첨부
서약서 및 위임장 (원본)	- 공제회가 학교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공- 피해학생 보호자가 작성
확인서 (원본)	- 공제회가 학교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공- 가해학생 보호자가 작성
합의금 지급 증빙서류 (사본)	- 영수증, 입금내역 등 관련 서류 - 피해학생 보호자가 준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사본, 카드전표,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대체 불가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원본)	- 사본, 카드전표로 대체 불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사본)	-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 - 치료비용에 비급여 항목이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청구인 통장 표지 (사본)	- 치료비 지급 계좌 확인용
진단서 (원본)	- 청구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원본)	- 청구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제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4. 교육청 지정 전문심리상담기관 -

연번	지역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1	청주	마음편한정신과의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50-1	043-237-8872
2	청주	예사랑병원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78-24	043-298-7337
3	청주	예일정신과의원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53-1	043-222-1326
4	청주	원구연신경정신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71 원할머니보쌈 3층	043-263-0011
5	청주	유완상신경정신과의원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106-4	043-252-7895
6	청주	청주신경정신과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56-2	043-266-0014
7	청주	최인석신경정신과의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68	043-284-3886
8	충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주시 교현2동 620-5	043-840-8200
9	제천	미사랑정신과의원	제천시 인성동 31-1	043-652-4778
10	제천	제천시정신보건센터	제천시 청전동 110 보건복지센터 3층	043-646-3074
11	제천	창민의료재단 제천병원	제천시 천남동 355-5	043-640-6076
12	보은	보은군정신보건센터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402-37	043-544-6991
13	보은	보은연세병원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72-1	043-542-3100
14	보은	보은한양병원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36-1	043-544-1500
15	영동	영동신경정신과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85-18	043-744-6888
16	진천	진천성모병원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71-4	043-533-1710
17	괴산	충북기독병원	괴산군 문광면 흑석리 3	043-833-1004
18	단양	단양의원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79	043-423-9114
19	대전	지정신과(대전 중구)	대전시 중구 대흥동 508-71	042-256-5551
20	대전	지정신과(대전 서구)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13 파이낸스 타워 401호	042-484-6655
21	원주	원주연세주니어상담클리닉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12-2 광장빌딩 5층 503호	033–762–9960

--- 5. 지원 대상 학교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대상자 선정 절차



2. 치료 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



- 3. 지원 범위

지 원 대 상	기간
-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년

[※]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간 연장 가능

- 4.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대상자 신청 서류 -

구 분	내 용
상담·심리 치료대상자 선정 신청서(원본)	본인이 직접 또는 학교장이 대리하여 작성 후 신청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 날인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원본)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직접 작성 및 서명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원본)	- 피해자가 피공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진단서 (원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
기타 서류	-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문위원회 및 공제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5. 치료비용 청구 서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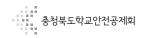
구 분	내 용
상담·심리 치료비용 청구서 (원본)	- 본인이 직접 또는 학교장이 대리하여 작성 후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 날인 불필요
기타 서류	- 그 밖에 치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사본, 카드전표,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대체 불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사본, 카드전표로 대체 불가
청구인 통장 표지 (사본)	- 치료비용 지급 계좌 확인용

[※] 자문위원회 및 공제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6. 지원 대상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 공민학교,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관련 서식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서식자료)에서 내려받기 가능



Ⅳ 주요 문의 사항



☼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mark>3년간</mark>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치료가 장기화 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유의 해주셔야 합니다.

🔾 졸업, 퇴학 또는 전학을 간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관계없이 청구하실 수 있으며, 학교를 통해 청구하시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학교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료비용[요양급여] 청구 시 의료기관 내원을 위한 교통비용이나 식사비용, 관련된 부대비용도 공제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아닙니다. 피공제자가 의료기관에 수납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에 한하여 지급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명시된 일부 항목이 지급되며, 교통비용, 식사비용, 관련부대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급여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공제회의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 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한: 보상심사위원회, 보상재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음)

Q.학부모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를 경유하는 방법과 학부모님이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통지는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통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제급여 지급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을 통하거나 직접 공제급여 신청 의사를 학교에 알리시거나, 청구 전 사고 통지 여부를 확인하신다면 좀 더 신속하고 원할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피공제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외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 친구와 장난 중 상대방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치료비용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 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등)

Q 학교폭력 피해자가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육청 지정 기관에서의 심리상담 및 조언(심리치료 포함)에 대해서는 실비(교통비, 식비 등 제외)를 지급하지만, 다른 병원에서의 심리치료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oldsymbol{0}$ <u>상담 및 심리적</u> 치료 지원 신청 시 함께 치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선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어야 하며, 이후 치료가 끝나면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대상자 신청은 요양급여 최종 청구 일로부터 3년 내에, 치료비 청구는 치료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

자해 및 자살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아닌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의료기관의 치료지시 거부 및 방해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 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보상

가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 포함)

기타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아닌 질병 등

∜ 부당이득 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등 ▶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반환
-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 수급권자와 당해 요양기관이 연대하여 고제그여 사단애의 방화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학교안전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 배너 클릭!
- ▶ 신고내용 : 허위신고, 과잉 및 허위진료, 불법 브로커 개입 등





(2854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TEL: 043)252-7109 FAX: 043)253-0177

공제급여관리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http://chungbuk.ssif.or.kr/